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김건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596
----------	-------

발의연월일 : 2026. 2. 5.

발 의 자 : 김 건 · 박수영 · 김은혜
배준영 · 안상훈 · 서명옥
이종배 · 추경호 · 서범수
김기웅 · 김미애 의원
(11인)

제안이유

2025년 11월 14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포함하여, 향후 전략적 투자 사업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내 제도적 기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략적 투자 사업 추진에 관한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고, 법적 구속력 없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국내법적 효력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향후 법정 분쟁이나 해석상 혼선을 방지함. 또한 투자 사업 추진 전에 국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받도록 함.

아울러 재정경제부에 한미투자운영위원회를 신설하여 한미 간 전략적 투자 협력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략적 산업 분야의 의미 등(안 제2조)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등을 전략적 산업 분야로 정의함.

나.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4조 및 제5조)

전략적투자의 총괄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에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대미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을 검토 및 운영함.

다. 국회의 사전동의(안 제7조)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가 대미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의사를 심의·의결을 한 경우, 국회에 보고 및 동의를 받아야 함. 이 경우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서류도 제출해야 함.

라.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재정경제부장관은 전략적투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의 투자협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략적 산업 분야”란 다음 각 목의 분야를 말한다.

가. 조선

나. 반도체

다. 의약품

라. 핵심광물

마. 에너지

바.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사. 그 밖에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 증진에 중요한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2. “전략적투자”란 대한민국이 미국의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략적투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투자사업의 심의 및 국회 동의

제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전략적투자를 총괄 기획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전략적투자의 총괄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투자 대상 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의사에 관한 사항
4. 투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투자결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전략적투자 재원의 조성 및 관리·운용 및 제6조에 따른 채권 발행에 관한 사항
6. 제7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전략적투자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제4호의 투자 사업에 대한 투자결정 및 집행에 있어서 사업 진척정도를 고려한 금액을 집행하여야 하며, 회계연도별로 총 200억 미국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의 투자를 집행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③ 운영위원회는 제1항제4호의 투자 집행이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국통화의 불규칙한 변동 등 외환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투자 집행의 금액과 시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국과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 조달) ① 전략적투자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로 조달한다.

1. 정부 출연금 3조원
2. 제2항에 다른 전략적투자채권 발행 자금

3. 위탁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에 사전 동의를 얻은 위탁자산 및 차입금, 출연금

4. 정부로부터의 차입금

5. 법인, 조합, 단체 등의 출연금

6. 기금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전략적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전략적투자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이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매회 그 금액·조건과 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⑤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자의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국회의 사전동의) ① 운영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심의·의결을 한 경우, 국회에 이를 보고하고 사업의 제안 또는 추진

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회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회가 동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미국에 투자 사업을 제안하거나 미국이 제안한 투자 사업의 추진에 동의하고 미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미국과 협의한 경우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이 밖에 국회의 동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위탁기관의 지정)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전략적투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산업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3. 한국무역보험공사
4. 한국투자공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투자대상 사업의 실사 및 평가
2. 투자자산의 관리 및 운용
3. 투자수익의 회수 및 정산
4. 투자계약의 체결 및 이행 관리

5.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9조(업무위탁의 절차 및 방식)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와 방식, 회계처리 방식, 수수료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관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업무위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업무의 범위 및 내용
2. 위탁기간
3. 업무수행 방법 및 절차
4. 수수료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5. 업무수행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0조(위탁기관의 의무)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탁기관은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결과를 정기적으로 재정경제부장관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관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기관에 대한 감독) 재정경제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업무수행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2조(자료의 비공개) 정부 및 위탁기관은 운영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출받은 자료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영업비밀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국회 보고)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전략적투자의 추진 현황 및 재원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1년에 한 번 이상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수행 실적을 1년에 한 번 이상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면책)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한국은행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